

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,
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23일

경기도교육감

1. 교섭요구 노동조합

-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

구 분	전국여성노동조합	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	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
대표자	나지현	박금자	최준식

2. 교섭요구일 : 2018. 9. 12.

3.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방법

- 참여방법 :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
(2018. 10. 30. 18:00시까지)
-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, 팩스 중 택일(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)
- 제출처 :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담당
-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(우편번호 440-702)
- Fax : 031-248-2118
-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
 -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
 -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교섭을 요구한 날과 조합원 수(교섭요구일 기준)

4. 주의사항

-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031-249-0660)